

의안번호	2220496
의 퇴 인	배현진의원
회 답 일	2026. 9. 3.
추계번호	26C408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2조의2(성인인증 장치의 인증)	성인인증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성인인증장치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인증을 받아야 함(제1항)	의무규정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인인증장치가 다음 각 호의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증을 할 수 있음(제2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신원확인 수단을 통하여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2. 이용자가 해당 신원확인수단의 정당한 이용자 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타인의 신원확인수단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 3. 이용자가 제시하는 신원확인수단의 위조·변조·복제 등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을 것 4. 성인인증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인증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갖출 것 5. 그 밖에 청소년 보호,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재량규정
		그 밖에 인증 신청 및 인증의 방법·절차, 인증수수료 및 인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2	안 제32조의5(성인인증 장치에 대한 점검)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조·수입·판매 또는 공급되거나 설치·운영되고 있는 성인인증장치가 미인증 성인인증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인증기준 적합성을 유지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방문을 통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3	안 부칙 제4조(기존 성인인증장치의 교체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성인인증장치를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성인인증장치로 교체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조·보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2조의2(성인인증장치 의 인증)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32조의5(성인인증장 치에 대한 점검)	
3	안 부칙 제4조(기존 성인 인증장치의 교체 등에 대 한 지원)	

2. 상세 사유

가. 성인인증장치의 인증(안 제32조의2)

- 개정안은 성인인증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그 성인인증장치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는 등, 성인인증장치에 대한 국가인증제 도입을 예정하고 있어,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어떤 기술 사양(광학 스캐너 정확도, 위변조 신분증 판별 알고리즘, 모바일 신분증 연동 규격 등)을 통과해야 인증을 줄 것인지 등 구체적인 인증 기준 설정을 위한 각종 회의 비용이나 인증 표준 및 시험·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서 인증 신청 및 인증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인증기준 등이 확정되지 않

은 현시점에서 성인인증장치 인증을 위한 업무수행 방식과 필요인력 등을 가정하여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성평등가족부는 성인인증장치에 대한 인증이나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 바가 없어, 관련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인증 등 가능 여부는 전문·기술적 영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기술 또는 신분확인 관련 부처 소관으로 설명하고 있음

나. 성인인증장치에 대한 점검(안 제32조의5)

-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성인인증장치가 미인증 성인인증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인증기준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방문을 통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구체적인 점검 내용이나 범위, 방식 등이 결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다. 기존 성인인증장치의 교체 등 지원(안 부칙 제4조)

-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성인인증장치로 교체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조·보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서 지원의 대상·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등 현시점에서 교체 및 개조·보완에 따른 지원 대상 및 규모를 확정할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문지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